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42 발의연월일: 2025. 4. 30.

발 의 자:신영대・임오경・안호영

홍기원 · 황 희 · 이학영

박수현 • 추미애 • 박지원

김용만 • 권칠승 • 박희승

정태호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,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,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,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, 현재 어촌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 어 과세 특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어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어촌의 청장년층 유입을 제고하고자 함(안제9조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"2025년"을 "2035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2025년"을 "2035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	제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	②
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	
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3항에	
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	<u>2035년</u>
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	
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	③
업권·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	
득세를, 어업권·양식업권에 관	
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	
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	
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	
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	
면허세를 <u>2025년</u> 12월 31일까	<u>2035년</u>
지 각각 면제한다.	